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구호약자의 범위에 아동을 추가〉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40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22.
3. 회부연월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중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하여 약하고 저항력이 낮아 재해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하므로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시설 상실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구호약자의 범위에 아동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① ----- ----- ----- ----- ----- ----- -- .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5. ----- ----- ----- ----- -----노인, 아동----- -----

현행	개정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재난의 발생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등¹⁾에게 임시주거시설은 발생한 재난으로부터의 대피뿐만 아니라 연이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재해를 복구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 발생에 따라 적시에 제공될 필요가 높은 구호의 종류라고 볼 수 있음.

현행법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 차원에서 구호기관²⁾이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유형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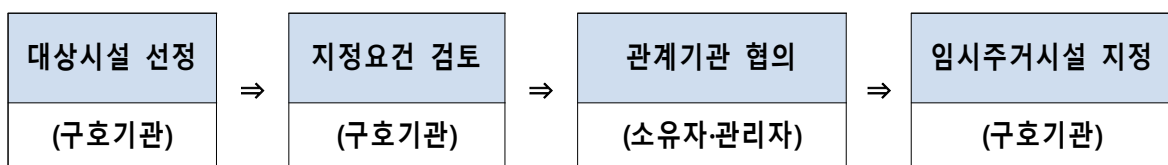
- 1)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유형(「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

구 분	내 용
제1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제2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제3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제5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대통령령 :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그 밖에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구호기관은 행정구역별 인구 분포, 접근성, 이재민등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지정하고, 해당 시설별로 읍·면·동 직원 또는 시설 관리자를 임시주거시설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³⁾.

[현행 임시주거시설 지정 절차]



(자료 : 행정안전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임시주거시설은 15,866개소로 나타남.

3) 「2025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제4장 임시주거시설 지원 p.59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2026. 2월 기준)]

(단위 : 개소)

시·도별	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연수·숙박시설	병원급 의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그밖의 시설*
계	15,866	117	15	6,330	2,288	3,719	3,397
서울	1,201	4	2	625	1	124	445
부산	509	5	-	296	61	42	105
대구	325	2	-	226	23	-	74
인천	617	3	-	297	41	93	183
광주	194	-	1	150	1	3	39
대전	198	-	-	136	1	31	30
울산	303	1	-	165	-	41	96
세종	156	-	-	82	25	24	25
경기	3,319	16	8	1,314	522	875	584
강원	725	12	1	317	90	178	170
충북	960	8	-	296	77	409	170
충남	1,641	4	-	500	256	711	290
전북	582	6	2	289	6	88	487
전남	1,721	9	-	507	468	447	364
경북	1,610	32	1	573	206	311	17
경남	1,610	15	-	541	473	217	127
제주	195	-	-	16	37	125	191

(자료 : 행정안전부)

* 그밖의 시설에는 공공시설(관공서, 시민회관 등), 민간숙박시설(모텔, 펜션 등), 종교시설, 문화체육센터, 복지관 등이 포함됨.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15개소가 있는데, 재해 발생 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구호약자에 아동이 제외되어 있음⁴⁾.

4)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2(구호약자)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이에 개정안은 일반 성인에 비해 재해로 인한 피해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구호약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참고로, 아동은 아니지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맥락에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에 어린이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⁵⁾에서 이재민 보호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도 개정안과 같이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구호약자를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구호약자들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나 간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아동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 시행령은 구호약자의 범위에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등 뿐만 아니라 신체질환 등으로 구호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신체질환 등으로 구호기관이 법 제4조의2제1항 제5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체계 하에서도 상황에 따라 신체질환 등이 있는 아동이라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상 구호약자에 ‘아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진 않았으나, 건강관리 또는 심신 안정 등이 필요한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에서 임시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재해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사람을 구호약자로 더욱 두텁게 보호 하자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18세 미만인 아동⁶⁾보다는 실제 저항력이 낮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⁷⁾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6)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